

교원연구년제운영규정

제 정	2000.	3.
개 정	2001.	4.
개 정	2006.	3.
개 정	2009.	1.
개 정	2011.	8.
개 정	2012.	3.
개 정	2013.	1.
개 정	2016.	8.
개 정	2020.	10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전임교원이 국내외에서 연구활동(학술연구와 산학협력연구)(이하 “연구활동”이라 한다)에만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학문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년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교원의 “연구년”이라 함은 본 대학에서 일정기간 근속한 전임교원이 본 대학의 수업 등 일정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.

제3조 (연구년의 기간) ①연구년의 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 이내로 한다.

②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당초 승인된 기간과 연장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연구년 기간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 (자격) ①연구년 수혜교원(이하 “연구교원”이라 한다)은 본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7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임까지의 잔여 근무년수가 7년 이상 해당자 및 대학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공이 인정되는 교원으로 한다. 단, 외국인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근무년수가 3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(개정 2020.10.06.)

②연구교원은 제6조 제2항과 같은 뚜렷한 연구계획이 있는 자에 한한다.

③교무위원으로 재임중에는 연구교원 신청을 할 수 없다.

④휴직기간은 계속 근무년수 산정에서 제외하며, 휴직기간 중에는 연구교원 신청을 할 수 없다.

⑤연구교원으로 선정되었던 교원은 복귀일로부터 7년 이상 근속하여야 연구교원을 재신청 할 수 있다. 단, 외국인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근속을 원칙으로 한다.(개정 2020.10.06.)

⑥ 위 ①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임용된 날로부터 10년이상 근속하고도 연구년을 미실시한 전임교원에 한하여 총장이 인정한 경우 연구교원을 신청할 수 있다.(신설 2016.08.29)

제5조 (신청) 연구교원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교원은 소정의 신청서를 소속 학부장을 경유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 (선정) ①연구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.

②교비지원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·외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연구파견이 예정된 교원은 연구교원으로 간주하고 연구년 선정 대상에서 우선한다.

③연구교원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.

1. 제2항에 해당되는 자
2. 연구계획이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된다고 인정된 자
3. 교원업적평가 결과에서 우수한 자

- 4. 연구교원으로 선정되었던 횟수가 적은 자
- 5. 근속기간이 오래된 자
- 6. 상위 직급인 자
- 7. 연장자

제7조 (인원) ①연구교원의 인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동일기간중 전체 전임교원에서 전공당 1인 이내로 한다.

② 삭제

제8조 (연구교원의 처우) ①연구교원은 본 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.

② 삭제

③연봉제 연구교원에게는 연봉 월액의 80%를 지급한다
(단, 총장이 필요할 경우는 100%를 지급할 수 있다.)

④연구교원에게는 별도의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⑤연구년 기간은 승진 및 호봉 승급의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에서 포함한다. 다만 연구 기간 중의 승진은 유보된다.

제9조 (연구교원의 의무) ①연구교원은 연구년 종료후 즉시 복귀하여야 한다.

②연구년이 만료된 교원은 복귀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연구교원은 연구년 종료후 3년 이상 본 대학에 재직하여야 한다. 다만, 징계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10조 (제재조치) 연구교원으로 파견되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.

- 1.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하여는 총장은 면직의 절차를 거쳐 면직처리하여야 한다.
- 2. 제9조제2항을 위반한 교원은 연구년 기간중 본 대학에서 지급한 급여중 상당분을 반환하여야 한다.
- 3. 제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교원은 연구년 기간중 본 대학에서 지급한 급여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1조 (강의대체) 연구교원이 담당하던 교과목의 강의는 소속학부의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강사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12조 (주관부서) 교원 연구년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한다.

제13조 (예외규정) 총장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제청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당 및 연구비 정의) 제8조제2항의 ‘수당’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말하며, ‘연구비’는 연구보조비를 포함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당 및 연구비 정의) 제8조제2항의 ‘수당’은 정근수당을 말하며, ‘연구비’는 연구보조비를 포함한

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